(제38회 - 2차 본회의)

이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0. 4. 21
산업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0년 4월 7일 이천시장 제출
나. 회 부 일 자 : 2000년 4월 10일
다. 상 정 일 자 : 제38회 이천시의회(임시회)
제1차(2000. 4. 19) 산업건설위원회 상정
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건설도시국장 박재한)

가. 제안이유

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없이 규제하고 있는 현행 과태료 징수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O 시장은 사기, 부실시공,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(안 제7조)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윤순성)

o 조례에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상위 법령에 근거 없이 규제해 왔던 현행 과태료 징수에 관한 규정(제7조)을 삭제하려고 개정하려는 것으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생 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만장일치)

7. 기타사항 : 없 음